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900
----------	------

발의연월일 : 2024. 8. 16.

발 의 자 : 박성준 의원

찬 성 자 : 169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송석준은 동료 국회의원(전현희)에게 권익위원회 고위직 간부 사망과 관련하여 “본인부터 반성하라. 본인이 그분에게 고생시킨 건 생각 안 하세요?”, “본인은 죽음에”, “본인은 기여 안 했어요? 본인은 발언할 자격이 없어요.” 등 살인죄의 누명을 씌우는 무도한 망언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요 관심사이자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훼방하

고 청문회의 목적과 본질을 왜곡하는 언행을 거듭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향후 예정되어있는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회의원(송석준)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석준은 8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전현희를 향해 “본인부터 반성하라. 본인이 그분에게 고생시킨 건 생각 안 하세요?”, “본인은 죽음에”, “본인은 기여 안 했어요? 본인은 발언할 자격이 없어요.” 등 권익위원회 고위직 간부 사망에 전현희 의원이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망언을 함.

이는 국회의원의 명예를 단순히 훼손한 것을 넘어서 동료 국회의원을 상대로 살인죄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이르게 하는 진실과 진상을 감추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그 책

임을 전가하려고 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언행임.

나. 권익위원회 고위직 공무원의 사망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
일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윗
선 개입과 권익위원회 내의 권력형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
심이 불거지면서 진상 규명의 필요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국회의원 송석준의 망언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을
부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였
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前 정부
의 잘못인양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의도
를 가진 망언으로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결임.

다. 국회의원 송석준의 망언은 가족의 사망으로 낙심하고 고통받고 있
는 유가족의 가슴에 재차 비수를 꽂은 것으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자, 2차 가해에 다름 아닌 것으로 언행의 죄질이 매우 심각함.

라. 국회의원 송석준은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여 전현희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악의적 의도를 갖고 저지하였으며, 국회
의원 송석준 의원의 망언 역시 전현희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

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부적절한 내용으로 「국회법」 제147조의 ‘발언 방해 등의 금지’ 및 「국회법」 제 146조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위반하였음.

마.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의 2차례의 경고와 국회의원 전현희의 공식 사과 요구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법제사법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꾸로 문제 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며 일절 반성하지 않음.

바. 국회의원 송석준은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존경하고픈 위원장”이라며 언급하는 등 선출된 상임위원장과 동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례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자질이 결여 되어 있음.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송석준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4조와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는 망언의 언어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국회의원

송석준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